

청년월세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수급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청 사유	<input type="checkbox"/>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자중 계좌 개설이 되지 않은 자 <input type="checkbox"/> 수급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수급자가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수령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개월간)	

※ 아래 후견인란은 「민법」에 따른 후견인만 작성합니다.

후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대리 수령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수급자와의 관계		

지급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본인은 위와 같이 청년월세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피성년후견인인 사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치매 또는 거동 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사실
- 신청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